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3. 11 선고 2019가단42175 판결 [공사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세광

담당변호사 이민정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원

담당변호사 박홍식

변론 종결 2021. 1. 21

판결 선고 2021. 3. 11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58, 300,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12. 21.부터 이 사건

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2015. 8. 10. 원고에게 동두천시 C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3억 원,공사기간 2015. 8. 10-2016. 3. 30.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,2016. 7.18. 위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가 마쳐졌다.

나. 피고는 2016. 9. 19. 원고에게 동두천시 D 외 2필지 지상 판매시설 신축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고 한다)를 공사대금 6억 5,000만 원(부가세 포함),공사기간 2016.9. 19.-2016. 12. 18.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,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. 9.19.1억 원,2016. 10. 18. 5,000만 원,2016. 11. 24. 5,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.

다. 피고는 2016. 12. 14. 원고에게,준공일까지 준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공사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(다만 위 내용증명우편은 반송되었다)

라. 원고는 2016. 12. 20.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포기각서(이하 '이 사건포기각서'라고 한다)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.

공사포기각서건축주 : B공사명 : E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공사장소 : 동두천시 D 외 2필지공사기간 : 2016년 9월 19.일 ~ 2016년 12월 18.일 공사금액 : 일금 육억 오천 만원(부가세포함) 상기 내용의 건축물에 대하여 2016년 9월 19.일 귀하와 계약하여 시공 중에 있으나 공 사 지연에 따른 <2016 .12. 18. 준공 완공>당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상기 공사를 포기 하고자 하오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차후 본 공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민, 형사상 의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이며 만일 문제가 발생시에는 당사에서 책임을 질 것을 각서 합니 다.

마. 피고는 2017. 1. 16. 소외 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잔여공사를 공사대금2억 7,000만 원(부가세 별도)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갑 제1, 2, 3호증, 을 제3, 4호증,을 저市호증의 1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잔여 기성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나.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·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포기각서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바, 통상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은 공사대금 외에 달리 생각하기 어려우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포기 각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 고,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.

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,부제소합의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되는데,이 사건 포기각 서의 부제소합의는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이 사건 포기각서에는 원고가 '이 사건 공사'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고,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 포기 이후 수급 인이 도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성금 문제인 점,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포기 당시 원고가 하도급업자들에게 미쳐 지급하 지 못한 공사대금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고 하는 점(갑 제9호증),원고는 이 사건 공사 를 포기한 2016 . 12. 20. 이후 약 2년 10개월이 지난 2019 . 9. 6.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,그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청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, 특히 원고는 2017년부터 C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소송이 벌어졌고,더구나 2018년에는 피고를 상대로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의 공 사대금을 청구하기도 하였는데,이때에도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은 청구하지 않았던 점(을 제1호증의 1, 2, 을 제2호증) 등에 비추어 볼 때,위 부제소합의가 특정되지 않 은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라거나,합의 당시

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관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.

라.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 당시 미지급된 기성금이 1억 8,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이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기성고 감정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한 점, 원고는 피고 가 이 사건 공사의 잔여공사에 관하여 F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금액이 2억 7,000만 원(부가세 별도)인 점을 들어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 당시 미지급된 기성금이 1억 8,000만 원에 이른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, F 주식회사는 그 무렵 피고와 G 외 1필지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계약(공사대금 35억 원, 공사기간 2016. 11. 17.-2017.6. 16.)을 체결한 상황이었던 점(을 제6호증), 원고는 갑 제9호증에 기재된 실행금액이 모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, 굴삭기 장비 대여금 12,965,000원은 C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와 이 사건 공사를 합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(갑 제15호증), 피고가 F 주식회사와 체결했던 G 외 1필지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서 현재 F 주식회사는 피고와 분쟁이 발생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갑 제2, 9, 11호증 등 원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포기각서 작성 당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기성 금이 1억 8,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부제소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고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정민